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0
----------	-----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7. 이영실 의원
2. 회부일자 : 2018. 10. 29
3.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영실 의원)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인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의 제명을 바꿈으로써 한국수어발전 사용 환경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의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5조제2항과 각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2016년2월)되고 시행(2016년 8월)된 바, 서울시 차원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수어 통역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활성화를 넘어서 한국 수어 환경을 개선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한국수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조례상 명시하고, 이러한 입법적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2018년 9월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농인은 총 5만 2천여명으로, 농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 농아인 컴퓨터 조성사업,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사업,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 청각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등이 있음.(시설별 자료는 첨부 자료 참조)

- 농인¹⁾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놓이게 된 실정임.
- 청각과 언어장애인인 농인은 관공서와 병원, 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화통역센터(25개 자치구마다 1개소 설치)를 이용하고 있으나, 전월세계약서 상담·경찰민원상담·야간진료상담·은행대출 상담 등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휴일·야간 등에 발생할 경우 농인이 겪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함.
-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수화언어 사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의 계획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임.
- 개정안 제5조는 수화언어법 제7조²⁾에 따른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1)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 조례가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방향을 조례상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u>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u> 2. <u>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u> 3. <u>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u> 4. <u>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5. <u>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6. <u>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u> 7. <u>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u> 8. <u>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u></p> <p>③ (현행과 같음)</p>

○ 개정안에 따른 집행부의 관련 사업명은 다음 표(표-2)와 같은 바, 집행부는 개정안 자체에 대해 특별한 이견(異見)이 없다고 보임.

<표> 개정안 제5조

개정안 내용	서울시 관련 사업명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p>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p>	<p>수어통역센터 운영 수어전문교육원 운영</p>	<p>-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시의</p>

		환경과 여건에 맞는 수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서울수어전문교육원에 '한국 수어의 이해' 강좌 개설	의견 없음
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의견 없음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교육 및 행사 등에 통역지원	의견 없음
5. 한국수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공인 수어통역사 시험반 교육 및 전문영역 보수교육	의견 없음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수어학술제, 수어통역사 의 날, 수어통역사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연수 : 연 1회	의견 없음
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수어학술제 개최	의견 없음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수어교육 및 교재개발	의견 없음

3 종합 의견

- 조례안은 농인(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촉구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집행부가 개정안(제5조제2항제1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시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수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관련 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를 본 조례 제정안의 소관부서로 배정한 것은 상위법의 관리체계와 맞지 않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사료됨.

- 살펴보건데, 본 조례안의 관련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2016. 08. 04. 시행)은 한국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고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음.

<참고 사항>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평가받도록 규정
※ 2013년에 국회에 4건의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³⁾이 제출(발의)되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2016년 2월 대안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

-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국어와 같은 공식 언어로 인정한 것임.
-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국수어를 장애인정책 차원에서

3) 국회 제출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 :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3.08.20.) 「수화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3.10.08.), 「한국수어법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2013.10.22.),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2013.11.26.)

집행하는 방식보다는 언어문화환경 조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농인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자유권적 기본권 등을 비장애인과 아무런 차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화환경 조성 및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명, 참석위원 찬성 8명, 반대 0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이영실 의원(1명)

찬 성 자 : 김화숙, 이승미, 이병도,
노식래, 김호평, 홍성룡,
황인구, 박순규, 박상구,
이정인, 오현정, 송명화,
문병훈, 박기재, 김경영,
이은주, 김경우, 김혜련,
봉양순, 서윤기, 김동식,
김소양 의원(22명)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인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의 제명을 바꿈으로써 한국수어발전 사용 환경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의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
(안 제5조제2항과 각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신설>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u> 2. <u>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u> 3. <u>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u> 4. <u>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5. <u>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6. <u>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u> 7. <u>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u> 8. <u>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u>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